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례의 제명이 적절하지 못하여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“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”를 “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”로 개정

첨 부

-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”를 “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